

① 정기교육 (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)

◆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: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“가급적 소규모 단위”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

-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,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,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) 안내
- 「감염병 재난」 기간에는 매일 작업 전 5분 또는 격일 10분 이상 등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자료 (사업장 대응지침 교육,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실천 방안 교육 등)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 반복 실시

○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, 반,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

- 관리감독자(부서장, 과장, 직장, 조장, 반장 등)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,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,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(작업)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

○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*하되,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

*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, TBM(Tool Box Meeting) 등

▶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“위기탈출 안전보건” APP → “10분 안전교육”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(교육시간 자동 등록, 붙임 1 참조)

○ (교육 자료 배포)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(카톡, 밴드, 이메일 등)으로 배포할 것

▶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(숙지)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(숙지)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

○ 금번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*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

*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

-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,
 -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
- (재택근무 근로자의 정기교육)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
- ▶ (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) 강사 및 근로자 전원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,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[공통]
 - 교육장소를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고 1회 4명 이내,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. 근로자간 좌석은 최소 1.5미터 ~ 2미터 이상 이격
 - TBM을 이용한 작업 전 10분 이내 안전보건교육
 - 안전보건공단 “위기탈출 안전보건” App 이용 TBM 실시
 - 10명~15명 부서 단위로 카톡방 개설 후 매일 아침 교육자료 게시, 관리감독자가 개별근로자별로 교육자료 내용의 주지(숙지)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맨투맨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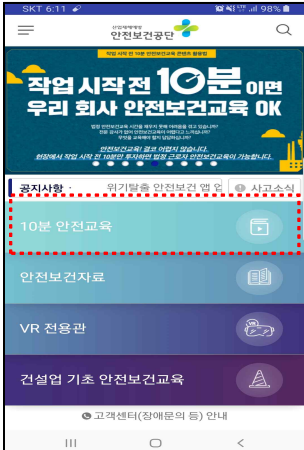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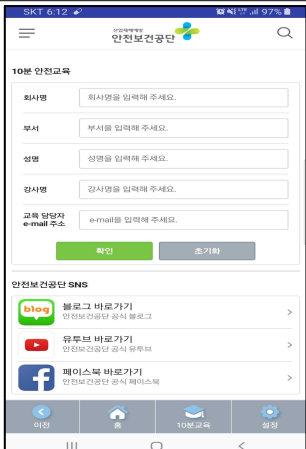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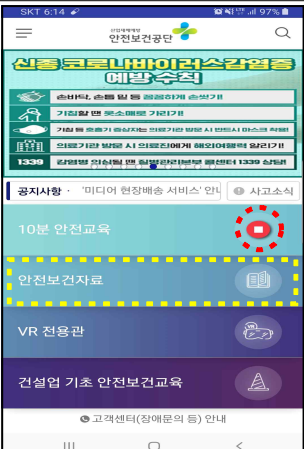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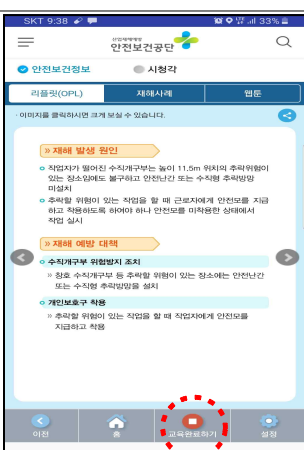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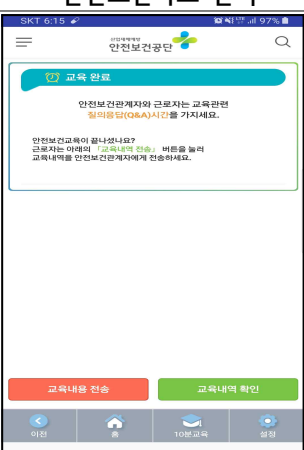
2 기타

-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“「코로나19(COVID-19)」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”을 따를 것
 -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
 - * '20.3.10. 7판 발표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).

3 시행시기: '20. 2. 4. ~ 위기경보 해제시까지

[붙임]

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설치 및 사용 방법

 1) 구글스토어 → 『위기탈출안전보건APP』 설치	 2) 위기탈출안전보건APP → 『10분 안전교육』 선택	 3) 『교육 종류』 선택
 4) 개인정보 입력 및 교육담당자 e-mail 입력	 5) 『교육 종류』 선택	 6) 기록 시작 확인 → 안전보건자료 선택
 7) 당일 교육 내용 선택 → 교육 시작	 8) 교육 종료 후 → 교육종료버튼 선택	 9) 교육내용 전송